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1.10.24 (월) 14:00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장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정 헌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1년 10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11년 10월 13일

3. 제안 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안 제2조)

나.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안 제3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